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및 투자일임계약 허용 >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550호)

2021. 2.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및 현황	5
2. 개정안의 요지	8
3. 검토의견	8
4. 개정안의 조문별 내용	12

I. 제안경위

2021년 1월 21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동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이러한 운용 형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도입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

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4호·제15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2).
-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거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

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제2항).

4)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 절차, 해지 방법, 사전지정운용요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및 제24조제4항).

나.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자산운용기관)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 2)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 3)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2 및 제36조의2).
- 4) 사용자에게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4조제3호의2 및 제48조제2항제4호).

다. 수수료

- 1)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항).
- 2)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및 제48조제2항제4호).

Ⅲ. 검토의견

1.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및 현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¹⁾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운용지시권을 누가 갖는지에 따라, i) 운용지시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과 ii) 운용지시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으로 구분됨.

i) 확정기여형²⁾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미리 결정된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³⁾을 매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급하게 됨.

ii) 확정급여형⁴⁾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⁵⁾, 사용자의 책임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되, 근로자에게는 사전에 결정된 퇴직급여액(평균임금 30일분)⁶⁾을 지급하게 됨.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⁷⁾,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⁸⁾,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이하 생략)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 11. (생략)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② (생략)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처리(計理)

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2019년말 기준으로⁹⁾,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약 630만명이며, 그 중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는 약 310만명, 확정급여형 가입 근로자는 약 300만명임.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약 39만 개소로서 2018년 대비 4.8%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확정기여형 도입 사업장은 약 24만 개소,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은 약 10만 개소임(<참고1> 참조).

<참고1>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및 사업장 현황(2019년말)

구분	전체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기타
근로자(명)	6,371,010 (100%)	3,116,730 (48.9%)	3,076,076 (48.3%)	178,204 (2.8%)
사업장(개소)	396,539 (100%)	244,376 (61.6%)	98,705 (24.9%)	53,458 (13.5%)

3. ~ 5. (생략)

② (생략)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 6. (생략)

② (생략)

9) 통계청 2019년말 기준 자료로서,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한편,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액은 2019년말 기준 약 219조 7천억원으로서 2018년 대비 16.3%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확정기여형은 25.4%, 확정급여형은 62.6%를 차지하고 있음.

2.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i)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고, ii)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적립금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iii) 수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3. 검토의견

현행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은 근로자(확정기여형의 경우) 또는 사용자(확정급여형의 경우)가 직접 선택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77%에 불과한데,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등 타 연금과 비교하여서도 2.5배 이상

수익률이 낮은 실정임(<참고2> 참조).

<참고2> 퇴직연금 등 수익률 비교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국민연금	4.57	4.69	7.28	-0.92	11.31	5.39
공무원연금	3.79	3.72	7.05	-1.70	9.30	4.43
사학연금	3.83	3.91	9.19	-2.45	10.94	5.08
퇴직연금	2.15	1.58	1.88	1.01	2.25	1.77

따라서,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등 적립금 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i)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확정기여형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하여 펀드에 의한 운용방법 또는 개인맞춤형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ii) 확정급여형으로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현행은 사용자가 전

문성이 부족하고 손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 개선에 취약한바, 사용자가 전문 투자일임업자에게 자산운용 권한을 일임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i)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상품의 최초 운용지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립금을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되는 것인데, 개정안의 경우 그 운용방법의 유형에 원리금보장형은 없고, 펀드에 의한 운용방법만 있어, 퇴직연금 운용의 불안정성·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으나, 대법원은 퇴직금을 후불임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¹⁰⁾, 이와 같은 퇴직금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ii) 개정안은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사용자가 적립금에 대하여 자산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에게 매년 최소적립금을 의무적으로

10)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적립¹¹⁾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에게 대한 투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과 상충되지 아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개정안(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대상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와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 취지에서,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의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종합하건데, 사전지정운용제도 및 투자일임계약의 허용은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는 측면과 펀드 투자 등으로 인한 퇴직연금 운용의 위험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임.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이하 생략)

12) 이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는 적립금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에도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1. 2. 8. 우리 위원회에 제출)

4. 개정안의 조문별 내용

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

개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의, 운용유형 및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의

개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념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정의하러는 것임(안 제2조).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u>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u>

현행	개정안
<신설>	다. 15.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2) 퇴직연금 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안 제19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규약에 포함하는 것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해당하므로 타당한 내용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 -----

현행	개정안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3)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등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21조의2),

이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손실가능성, 예상수익, 수수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만 허용하려는 것으로, 운용방법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이하 “운용유형”이라 한다)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아야 한다.</u> <u>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u> <u>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u>

현행	개정안
	<u>절</u> <u>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u> <u>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u> <u>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u> <u>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u> <u>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u>

현행	개정안
	<u>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유형</u> <u>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u> <u>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u>

4) 사전 정보제공 및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입자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u>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u> 2. <u>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3.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u>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운용방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⑥ (생략)

5)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절차 등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만료일부터 4주가 경과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도록 하며,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3항 등).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1조의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①·② (생략)</u> <u>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날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경과할 때까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u> <u>④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u> <u>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u>

현행	개정안
	<u>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u> <u>⑥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의 공시, 해지 방법의 고지,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투자일임계약의 허용

개정안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필요한 근거,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자산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 체결

개정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업자로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거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용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산운용기관의 요건 중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일임업자로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됨.

한편,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 되어 있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와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 취지에서 그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조의2(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산운용기관”이라 한다)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u> <u>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였을 것</u> <u>2.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u> <u>②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 <u>③·④ (생략)</u>

2) 자산운용기관의 적립금 운용방법

개정안은 자산운용기관이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29조의2제3항),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9조의2(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①·② (생략)</u> <u>③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산운용기관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한 후 이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기관이 선정하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u> ④ (생략)

3) 자산운용기관의 책무 및 등록취소

개정안은 자산운용기관의 준수 의무, 성실의무, 취급실적 제출의무, 적립금 수익률 공시 등 자산운용기관의 책무를 정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명시, 사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안 제33조의2 등), 자산운용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3조의2(자산운용기관의 책무)</u> ① <u>자산운용기관은 이 법을 준수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u> ② <u>자산운용기관은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u> ③ <u>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취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u>자산운용기관은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6조의2(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해산한 경우</u> <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u> <u>3. 제2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u> <u>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자산운용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산운용기관은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자산운용기관 등록을 할 수 없다.</u> <u>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u>

현행	개정안
	<u>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일임계약의 해지 안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u>

4) 자산운용기관의 책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자산운용기관의 책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8조제2항).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벌칙)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제36조의2제4항을 위반하</u>

현행	개정안
4.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 신 설 ></u> ③ (생략)	<u>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산운용기관</u> 4.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자산운용기관</u> ③ (현행과 같음)

다.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1) 적립금 운영수익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안 제29조의3제1항 등),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이 적립금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용성과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연금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가입자 및 적립금의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개정안의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비중이 현재보다 확대되어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29조의3(수수료) ①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업무 수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2) 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안 제29조의3제3항), 이에 대한 미이행 시 제재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9조의3(수수료) ①·② (생략)</u> <u>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문 의 처
02)6788-5538